

산업 데이터 및 프로세스 사이언스 인재 양성 및 연구팀 자체운영규정

제정 2024.05.20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『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』의 지원을 받는 “산업 데이터 및 프로세스 사이언스 인재 양성 및 연구팀” (이하 “교육연구팀”이라 함)의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업기간) ① 본 사업은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중 미래인재양성사업 유형이다.

② 본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2024년 03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③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. 단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본 교육연구팀 모든 참여자에게 적용한다.

②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

가.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

나.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

다.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

라. 포항공과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

제 2 장 교육연구팀 구성

제 4 조 (교육연구팀의 장) ① 교육연구팀장은 교육연구팀을 대표하고, 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며, 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5 조 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 및 참여교수로 구성되며,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 수행에 관한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, 필요시 교육연구팀장의 결의로 최종 의결 한다.

제 6 조 (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) ①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의 자격은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9조에 따른다

- ② 참여교수가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(6개월 이상)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(논문지도 포함)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교수의 교육연구팀 참여를 인정한다.
- ③ 타학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참여교수가 교체 될 경우 지도를 받고 있는 참여 대학원생은 신규 참여교수 또는 교육연구팀내 다른 참여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.

제 7 조 (참여교수의 변경) ① 교육연구팀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, 사업신청 시를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.

②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, 교육연구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,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.

④ 참여교수 교체 시 선발기준은 연구역량을 우선시 평가하며,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8 조 (참여 대학원생)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·박사·통합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

나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

다.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 통합과정생

②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,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

③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1일, 10월1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(고용보험, 의료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) 가입여부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교육연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위 서류가 전일제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 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지원 대학원생 선발기준)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,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가.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: 월 100만원 이상

나.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: 최저 월 160만원 이상

다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월 130만 원 이상

라. 대학 규정 및 연구진행 상황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지원대학원생의 선정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등 연구업적이 뛰어난 학생을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교육연구팀장이 교수별 장학금 지원액을 차등 배정 할 수 있다.
- ③ 지원대학원생은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과 8월 중에 운영위원회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거쳐 교육연구팀장이 선정 및 최종결정하며,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.0 미만인 학생은 제외된다.
- ④ 지원대학원생의 수 및 지원금액은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재원의 범위 및 상위규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신진연구인력) ①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(이하 “신진연구인력”이라 한다)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.

② 박사후과정생(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)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.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나.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.

다.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다만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,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팀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
라.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학교 내·외, 주·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(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.)를 할 수 있다. 단,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.

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.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,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.

나. 계약교수는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·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다. 계약교수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.

라.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다만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,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팀에서 교육·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
마. 계약교수는 교육·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·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(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.)를 할 수 있다.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.

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(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)로 하되,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박사후과정생 중 ‘리서치 펠로우’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

최대 4년은 초과 할 수 없다.

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,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.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중 소속을 허용한다.

가. 대학(본·분교 포함)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

나. 타 대학(본·분교 포함) 및 기관 소속 휴직자

다. 타 대학(본·분교 포함)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

제 11 조 (산학협력전담인력) ① 교육연구팀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해당 대학의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.

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 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다만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,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팀에서 교육·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
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(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)로 하되,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선발은 교육연구팀의 목적에 맞는 산학협동연구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연구팀장이 최종 선정한다.

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보수는 BK21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팀장이 결정한다.

제 3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제 12 조 (해외석학 초빙) ① 해외석학은 국제적으로 학술적인 권위가 있는 인사로서,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인사로 한다.

②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 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.

③ 해외석학 초빙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 및 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.

가. 항공료는 항공기 일반석 운임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 등급의 운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나. 여비 및 체재비 (일비, 숙박비, 식비)는 대학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에서 활용할 경우 ‘국내여비기준’을, 해외현지에서 활용할 경우 ‘국외여비기준’을 적용한다.

다.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는 전문가초청 자문료 (강사료)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.

제 13 조 (장단기 해외연수 국제협력경비) ① 장기해외연수는 국제간의 학술교류, 공동

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15일 초과 연수 활동을 말한다.

② 단기해외연수는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(4개국 이상 참여,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, 총 구두발표 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 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)을 충족하는 국제학술회 또는 외국기관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15일 이내의 연수 활동을 말하며, 특별한 경우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교육연구팀장이 결정한다.

③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생 선발은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교수가 추천을 하여, 교육연구팀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선발한다.

④ 교육연구팀장은 지도교수 추천과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사업의 기여도, 대학원생의 연수능력 및 연수 기대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원생 장단기해외연수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
⑤ 지원금액은 항공료, 학회 등록비, 국내교통비는 실제소요 금액, 체제비 (실비 혹은 본교 여비규정에 준하는 금액) 등 해외 연구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국제학술회의 및 공동연구 참가일 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신청서류

(1) 국제학술대회 참가 신청서 1부

(2)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 계획서 1부

(3) 발표논문 및 학술회의 팜플렛 (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) 또는 공동 연구 초청장 1부

(4) 항공권 INVOICE 1부 (E-ticket 포함)

(5)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

(6) 국제학술대회 인정·지원기준 확인서 1부 (미확정 자료 임시 제출)

⑧ 국제학술회의 및 공동연구 참가 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제출서류

(1) 국제협력프로그램 참가 결과 보고서 1부

(2)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(신분 및 출입국사실 확인 가능 한 면) 1부

(3) 항공 탑승권 원본 (e-ticket 또는 항공 ticket) 1부

(4) 추가 실비정산 (국내교통비, 현직교통비, 숙박비 등) 영수증 각 1부

(5) 국제학술대회 인정·지원기준 확인서 1부 (학회 종료 후 확정된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)

⑨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여비 규정에 따른다.

제 14 조 (인센티브 지급기준)

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, 교육연구단 소속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교육연구팀장이 참여인력의 연구업적과 교육연구팀 기여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(2024. 05. 20)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제정일 2024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4】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

구 분		집행 기준	비 고
1.대학원생 연구장학금		- 석사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 - 박사과정생 월 160만원 이상 - 박사수료생 월 130만원 이상	- 학기별, 분기별, 월별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대학 및 교육연구단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
2.신진연구인력 인건비		월 300만원 이상	-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액수임 - 리서치펠로우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·집행 가능(최소기준 미적용)
3.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		주관대학 지급기준에 따름	-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
4.교육과정 개발비		- 교재개발비 - 사례조사비 및 실험비 등	- 교육과정 개발 관련제반 경비를 편성·집행
5.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		- 논문 게재료 - 국내 학회, 세미나 참가비 - 소모성 재료비 - 창업 취업지도,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 경비	-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제한 - 기자재 및 장비 구매비 집행 불가
6.국제화경비		-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·단기 해외 연수 경비 - 해외학자 초빙, 국제학술회의 참가비용 - 해외특허 출원(등록)비	- 참석 여부 및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기 해외연수 지양 - 해외학자 초빙·활용경비는 해외학자의 국내 실 체류기간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며, 주관대학의 전문가 활용규정을 준용하여 수당, 체재비 및 항공료 등 지원
7. 교육연구단 운영비	인건비	- 4단계 BK21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교육연구단 소속 직원 인건비	- 퇴직금 포함
	성과급	-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,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	-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, 1인당 연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평가를 통하여 지급) -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(정기적 지급 등)
	국내 여비	-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	-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(단, 국·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) ※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 등은 국제협력 경비에서 집행
	학술 활동 지원비	- 전문가 초청 자문료·원고료 - 도서 등 문헌 구입비 - 국내·외 정보 수집비 등	- 참여교수에 대한 정책 연구비, 교재 개발비, 자문료, 원고료 등의 지급 제한
	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비	- 국내·외 특허 출원·등록비	
	일반 수용비	- 사무용품 구입비, 인쇄비, 홍보물 제작비,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	-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,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
	회의 및 행사 개최비	- 회의비, 각종행사경비, 식대 등	- 사업 참여교수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- 회의비 집행 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
	기타	-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교육연구단에서 적절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	
8.간접비		대학(산학협력단 포함)의 교육연구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	-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연간 사업비 총액의 5%를 넘을 수 없음 ※ 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울산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은 연간 사업비 총액의 2%를 넘을 수 없음